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657호 2025. 10. 23.(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고 시

- 예천군 군도 노선의 지정·변경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5-126호)
- 예천군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변경)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5-127호)
- 하천점용 허가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5-129호)

공 고

- 예천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 공고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예천군 공고 제2025-1398호)
-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5-1417호)
- 예천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공람공고(예천군 공고 제2025-1418호)
- 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5-1427호)
-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체육사업소 공고 제2025-22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71)

도로 노선의 ☐ 지정
☐ 변경 고시
☐ 폐지

고시 제2025 - 126호

도로법 ☐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 제21조제3항

도로 노선을 다음과 같이 ☐ 지정
☐ 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폐지

2025년 10월 23일

예 천



구 분		☐ 지정 ☐ 기존	☐ 폐지 ☐ 변경
도로의 종류		군도	군도
노선번호		붙임자료 참조	붙임자료 참조
노선명		붙임자료 참조	붙임자료 참조
기점		붙임자료 참조	붙임자료 참조
종점		붙임자료 참조	붙임자료 참조
주요 통과지		붙임자료 참조	붙임자료 참조
총연장(킬로미터)		붙임자료 참조	붙임자료 참조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붙임자료 참조	붙임자료 참조
	연장 (킬로미터)	붙임자료 참조	붙임자료 참조

고시 제2025 - 126호

군도 노선의 지정(변경)고시

「도로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4항, 제21조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군도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예 천 군 수 (인)



군도 번호	노선명	구분	연장 (km)	도로구간		주요 통과지	다른노선 중복구간 (km)	(변경) 고시사유
				기 점	종 점			
총 계		기정	189.2	18개 노선			-	-
		변경	200.3	20개 노선			-	(증)11.1
군도 3호선	예천~보문	기정	4.7	예천읍 서본리 88-1	예천읍 통명리 113-8	예천읍	-	- 실연장 반영 (연장조정)
군도 3호선	예천~보문	변경	4.9	예천읍 서본리 88-1	예천읍 통명리 113-8	예천읍	-	
군도 4호선	효자~고향	기정	5.7	효자면 도춘리 579-2	효자면 백석리 97-1	효자면	-	- 변경없음
군도 4호선	효자~고향	변경	5.7	효자면 도춘리 579-2	효자면 백석리 81-2	효자면	-	
군도 5호선	풍산~보문	기정	8.0	보문면 신월리 산35-1	보문면 오암리 산80-1	보문면	-	- 실연장 반영 (연장조정)
군도 5호선	풍산~보문	변경	7.7	보문면 신월리 산35-1	보문면 오암리 산80-1	보문면	-	

군도 번호	노선명	구분	연장 (km)	도로구간		주요 통과지	다른노선 중복구간 (km)	(변경) 고시사유
				기 점	종 점			
군도 7호선	지보~유천	기정	14.1	지보면 마전리 875-1	유천면 매산리 292-7	지보면 유천면 개포면	-	- 내성천 교량 반영 (선형조정)
군도 7호선	지보~유천	변경	14.1	지보면 마전리 875-1	유천면 매산리 292-7	지보면 유천면 개포면	-	
군도 8호선	가야~고산	기정	18.5	용궁면 가야리 138	유천면 고산리 381	용궁면 유천면	-	- 실연장 반영 (연장조정)
군도 8호선	가야~고산	변경	18.4	용궁면 가야리 138	유천면 고산리 381	용궁면 유천면	-	
군도 9호선	풍양~용궁	기정	13.2	풍양면 청곡리 61	용궁면 읍부리 148-4	풍양면 지보면 용궁면	-	- 신설도로 반영 - 기점부 변경 (연장조정, 선형조정)
군도 9호선	풍양~용궁	변경	13.0	풍양면 청곡리 293-5	용궁면 읍부리 148-4	풍양면 지보면 용궁면	-	
군도 10호선	영순~산북	기정	1.8	용궁면 덕계리 635-1	용궁면 덕계리 784-4	용궁면	-	- 변경없음
군도 10호선	영순~산북	변경	1.8	용궁면 덕계리 635-1	용궁면 덕계리 784-4	용궁면	-	
군도 13호선	낙동~함창	기정	4.0	풍양면 효갈리 965	풍양면 낙상리 655-2	풍양면	-	- 교량 신설 반영 (연장조정, 선형조정)
군도 13호선	낙동~함창	변경	3.9	풍양면 효갈리 965	풍양면 낙상리 655-2	풍양면	-	
군도 14호선	유천~용문	기정	12.6	유천면 가리 582-19	용문면 대제리 330-3	용문면 유천면	-	- 실연장 반영 (연장조정)
군도 14호선	유천~용문	변경	12.5	유천면 가리 582-19	용문면 대제리 330-3	용문면 유천면	-	

군도 번호	노선명	구분	연장 (km)	도로구간		주요 통과지	다른노선 중복구간 (km)	(변경) 고시사유
				기 점	종 점			
군도 15호선	호명~풍기	기정	22.6	호명읍 직산리 302-8	감천면 진평리 224-1	보문면 호명읍 감천면	군도 5호선 (1.2)	- 변경없음
군도 15호선	호명~풍기	변경	22.6	호명읍 직산리 302-8	감천면 진평리 224-1	보문면 호명읍 감천면	군도 5호선 (1.2)	
군도 18호선	예천~문수	기정	4.0	보문면 옥천리 393-3	보문면 기곡리 32	보문면	-	- 변경없음
군도 18호선	예천~문수	변경	4.0	보문면 옥천리 393-3	보문면 기곡리 32	보문면	-	
군도 19호선	감천~보문	기정	7.2	감천면 유리 107-1	보문면 옥천리 437-8	감천면 보문면	-	- 변경없음
군도 19호선	감천~보문	변경	7.2	감천면 유리 107-1	보문면 옥천리 437-8	감천면 보문면	-	
군도 20호선	용문~감천	기정	15.5	용문면 대제리 324-27	감천면 유리 142-22	용문면 감천면	-	- 실연장 반영 (연장조정)
군도 20호선	용문~감천	변경	15.7	용문면 대제리 324-27	감천면 유리 142-22	용문면 감천면	-	
군도 21호선	개포~예천	기정	11.3	개포면 풍정리 197-4	예천읍 석정리 64-1	개포면 예천읍 유천면	군도 14호선 (0.2)	- 실연장 반영 (연장조정)
군도 21호선	개포~예천	변경	11.1	개포면 풍정리 197-4	예천읍 석정리 64-1	개포면 예천읍 유천면	군도 14호선 (0.2)	
군도 22호선	용문~효자	기정	20.0	용문면 원류리 452-2	효자면 용두리 산1-4	용문면 효자면	-	- 실연장 반영 (연장조정)
군도 22호선	용문~효자	변경	19.4	용문면 원류리 452-2	효자면 용두리 산1-4	용문면 효자면	-	

군도 번호	노선명	구분	연장 (km)	도로구간		주요 통과지	다른노선 중복구간 (km)	(변경) 고시사유
				기 점	종 점			
군도 23호선	예천~장수	기정	11.2	예천읍 우계리 391-1	감천면 유리 산9-2	예천읍 감천면	-	- 실연장 반영 - 기종점부 변경 (연장조정)
군도 23호선	예천~장수	변경	11.0	예천읍 우계리 292-1	감천면 유리 산6-1	예천읍 감천면	-	
군도 24호선	예천~호명	기정	7.1	예천읍 청북리 688-14	호명읍 월포리 540-1	예천읍 호명읍	-	- 종점부 변경 (연장조정, 선형조정)
군도 24호선	예천~호명	변경	7.0	예천읍 청북리 688-14	호명읍 산합리 539	예천읍 호명읍	-	
군도 25호선	본포~호명	기정	7.7	호명읍 본포리 383-1	호명읍 본리 261-1	호명읍	-	- 변경없음
군도 25호선	본포~호명	변경	7.7	호명읍 본포리 383-1	호명읍 본리 261-1	호명읍	-	
군도 26호선	지보~용궁	신규	11.2	지보면 어신리 1295-1	용궁면 향석리 산 66-1	지보면 용궁면	-	- 신규지정
군도 27호선	모아엘가~ 우방셀터	신규	1.4	호명읍 산합리 539	호명읍 산합리 1399	호명읍	-	- 신규지정

농어촌도로기본계획(변경)의 고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제5항(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농어촌 도로의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예 천 군 수 (인)



읍면	도로의 종 류	노 선 번 호	노선명	총연장 (Km)	도로구간		주요 경과지	(변경) 고시사유
					기 점	종 점		
예천	면도	101	왕신선	1.8	왕신리 513	대심리 201	왕신리 대심리	연장조정 (감0.3)
예천	면도	102	청왕선	4.4	청북리 112-2	대심리 203	청북리 대심리	선형조정 (증0.1)
예천	리도	201	종산선	0.7	청북리 973-5	청북리 622-2	청북리	변경없음
예천	리도	202	귀밀선	2.7	우계리 652	갈구리 산 89	우계리 갈구리	변경없음
예천	리도	203	용산선	4.1	생천리 산44-1	용산리 385	생천리 용산리	변경없음
예천	리도	204	청동선	1.4	동본리 390-1	통명리 642-12	동본리 통명리	선형조정 중점변경 (감0.3)
예천	리도	205	우통선	1.8	통명리 567-1	통명리 671	통명리	변경없음
예천	리도	207	동갈선	0.5	우계리 602	갈구리 산 96	우계리 갈구리	변경없음

읍면	도로의 종 류	노 선 번 호	노선명	총연장 (Km)	도로구간		주요 경과지	(변경) 고시사유
					기 점	종 점		
예천	리도	208	석정선	0.5	석정리 682	석정리 40-2	석정리	선형조정 (증0.1)
예천	리도	209	내월선	1.6	고평리 776-6	고평리 816-3	고평리	변경없음
예천	농도	301	서정자	2.9	상동리 38	서본리 96-2	상동리 서본리	변경없음
예천	농도	302	지석선	2.5	석정리 689-1	지내리 66-2	석정리 지내리	변경없음
예천	농도	303	고신선	1.3	통명리 671-5	고평리 17	통명리 고평리	연장조정 (감0.1)
예천	농도	304	고평선	2.1	고평리 812-4	고평리 815	고평리	선형조정 (감0.3)
예천	농도	305	금마선	2.6	고평리 815	고평리 11-2	고평리	변경없음
예천	농도	306	방아실	1.4	왕신리 559	왕신리 241	왕신리	선형조정
예천	농도	309	못골선	1.6	생천리 605-7	생천리 산 63	생천리	변경없음
예천	농도	310	갈머리	0.6	갈구리 367	갈구리 154-4	갈구리	선형조정 기종점변경 (감1.2)
호명	면도	101	종신선	4.0	월포리 511-1	내신리 561	월포리 내신리	선형조정 기점변경
호명	면도	103	한어선	3.0	본포리 산 19-3	한어리 산 24-3	본포리 한어리	변경없음
호명	리도	202	종미선	2.2	종산리 270-2	종산리 841	종산리	연장조정 (감0.1)
호명	리도	203	행갈선	1.2	직산리 204-2	직산리 538	직산리	연장조정 (증0.1)
호명	리도	206	동막선	1.2	직산리 1239-3	직산리 산 86-1	직산리	변경없음

읍면	도로의 종 류	노 선 번 호	노선명	총연장 (Km)	도로구간		주요 경과지	(변경) 고시사유
					기 점	종 점		
호명	리도	207	원곡선	3.6	본포리 421-1	송곡리 460-1	본포리 송곡리	연장조정 (증0.1)
호명	리도	208	신송선	3.1	금능리 667	본포리 109-3	금능리 본포리	변경없음
호명	리도	209	백골선	3.1	직산리 1055-4	황지리 산 254	직산리 황지리	연장조정 (감0.1)
호명	리도	210	오산선	2.1	오천리 312	산합리 208-1	오천리 산합리	선형조정 종점변경 (감1.0)
호명	농도	301	형호선	2.7	월포리 407-2	오천리 산12-6	월포리 오천리	변경없음
호명	농도	302	번개선	1.2	송곡리 366-5	송곡리 76-22	송곡리	선형조정 종점변경 (감1.4)
호명	농도	303	논실선	1.6	황지리 692-5	황지리 831	황지리	연장조정 (증0.3)
호명	농도	304	담암선	2.6	내신리 609	담암리 546-11	내신리 담암리	선형조정 (증0.2)
호명	농도	305	뒷개선	2.0	종산리 271-3	담암리 546-11	종산리 담암리	연장조정 (감0.2)
호명	농도	306	경담선	1.6	담암리 423	내신리 529-1	담암리 내신리	연장조정 (증0.1)
용문	면도	103	덕금선	4.1	상금곡리 605-2	덕신리 401-2	상금곡리 덕신리	연장조정 (증0.1)
용문	면도	104	상내선	8.2	상금곡리 96-1	내지리 산 74-5	상금곡리 내지리	연장조정 (감1.2)
용문	리도	201	두지선	2.5	두천리 304-4	사부리 45	두천리 사부리	변경없음
용문	리도	202	구향선	5.7	구계리 189-4	두천리 산 5-8	구계리 두천리	변경없음
용문	리도	203	구노선	2.8	구계리 173-5	노사리 산 61	구계리 노사리	변경없음

읍면	도로의 종 류	노 선 번 호	노선명	총연장 (Km)	도로구간		주요 경과지	(변경) 고시사유
					기 점	종 점		
용문	리도	204	두사선	3.3	내지리 506-1	사부리 364-2	내지리 사부리	선형조정
용문	리도	205	동안선	0.9	내지리 281-1	내지리 343-3	내지리	연장조정 (증0.1)
용문	리도	207	하능선	4.3	하금곡리 483-4	능천리 산 29	하금곡리 능천리	변경없음
용문	리도	208	내지선	0.6	내지리 617	내지리 산 81	내지리	연장조정 (증0.1)
용문	농도	301	원류선	1.5	원류리 285-5	원류리 474	원류리 원류리	변경없음
용문	농도	302	방하선	3.9	방송리 350-2	하금곡리 538-2	방송리 하금곡리	연장조정 (증0.1)
용문	농도	303	하학선	1.5	하학리 509-4	하학리 126	하학리	연장조정 (증0.1)
효자	리도	201	두백선	9.4	두성리 173-4	백석리 372-1	두성리 백석리	연장조정 (감0.2)
효자	리도	202	보곡선	2.3	보곡리 173-3	보곡리 15-1	보곡리	연장조정 (감0.1)
효자	농도	301	초향선	2.2	백석리 23-1	초향리 261-2	백석리 초향리	변경없음
효자	농도	302	내현선	0.6	명봉리 297-2	명봉리 843	명봉리	연장조정 (증0.1)
효자	농도	303	모시선	1.1	고향리 529-2	고향리 1059	고향리	변경없음
은풍	리도	201	부시선	4.9	부초리 488-3	시향리 22-2	부초리 시향리	변경없음
은풍	리도	202	율곡선	2.3	부초리 570-2	율곡리 산 43	부초리 율곡리	변경없음
은풍	리도	203	진곡선	2.5	오류리 산 9-2	금곡리 477	오류리 금곡리	변경없음

읍면	도로의 종 류	노 선 번 호	노선명	총연장 (Km)	도로구간		주요 경과지	(변경) 고시사유
					기 점	종 점		
은풍	리도	205	금우선	2.1	우곡리 130-10	금곡리 155-5	우곡리 금곡리	연장조정 (증0.1)
은풍	리도	206	은산선	0.8	은산리 226-2	은산리 78-4	은산리	변경없음
은풍	농도	301	조고리	2.5	우곡리 311-5	은산리 516-6	우곡리 은산리	변경없음
은풍	농도	302	오율선	0.9	오류리 167-1	오류리 364	오류리	선형조정 종점변경 (감1.6)
감천	면도	101	대마선	2.7	포리 94-1	대맥리 산 92-1	포리 대맥리	연장조정 (증0.1)
감천	면도	102	포마선	1.6	포리 1293	포리 1312	포리	연장조정 (증0.1)
감천	리도	201	덕유선	2.5	덕율리 533-3	현내리 975	덕율리 현내리	연장조정 (증0.1)
감천	리도	203	덕수선	2.5	덕율리 437-6	덕율리 1393	덕율리	선형조정 기점변경 (감0.3)
감천	리도	205	대미선	2.5	포리 825-6	장산리 666-4	포리 장산리	변경없음
감천	리도	206	별수선	3.9	별방리 599	수한리 산 30-2	별방리 수한리	선형조정
감천	농도	302	돈답선	2.1	유리 701-13	돈산리 180	유리 돈산리	선형조정 (감0.1)
감천	농도	303	유증선	2.1	유리 494-1	증거리 44-1	유리 증거리	변경없음
감천	농도	304	석남선	4.0	포리 190-1	미석리 274	포리 미석리	선형조정 (감0.2)
감천	농도	305	장산선	3.2	포리 1333-7	장산리 609-6	포리 장산리	선형조정
감천	농도	306	장촌선	1.8	마촌리 138-5	마촌리 390-1	마촌리	변경없음

읍면	도로의 종 류	노 선 번 호	노선명	총연장 (Km)	도로구간		주요 경과지	(변경) 고시사유
					기 점	종 점		
감천	농도	307	고용선	2.8	덕율리 1094	관현리 45-3	덕율리 관현리	선형조정 기점변경
보문	면도	101	독양선	0.7	독양리 786-4	독양리 764-2	독양리	변경없음
보문	면도	102	간방선	3.0	신월리 640-2	간방리 634-1	신월리 간방리	변경없음
보문	면도	103	오우선	4.9	오신리 283-21	우래리 185-1	오신리 우래리	변경없음
보문	리도	201	동구선	1.9	승본리 469	승본리 산 48-1	승본리	연장조정 (증0.1)
보문	리도	202	우산선	6.8	우래리 621-6	산성리 산 142	우래리 산성리	변경없음
보문	리도	203	수우선	3.9	수계리 625-1	오신리 306-1	수계리 오신리	연장조정 (감0.1)
보문	리도	204	수계선	2.3	수계리 457-4	수계리 산 150-1	수계리	연장조정 (증0.1)
보문	리도	206	미신선	4.0	미호리 106-1	신월리 789	미호리 신월리	변경없음
보문	리도	207	막실선	2.0	독양리 801-1	독양리 62-1	독양리	변경없음
보문	리도	208	옥기선	2.6	기곡리 189	기곡리 38-1	기곡리	변경없음
보문	농도	301	수방선	1.6	수계리 253-1	수계리 93	수계리	변경없음
보문	농도	302	우평선	2.1	기곡리 713	우래리 산 80	기곡리 우래리	변경없음
보문	농도	304	읍실선	2.0	작곡리 75-3	작곡리 618	작곡리	변경없음
유천	면도	101	수덕선	1.6	수심리 538-3	수심리 631	수심리	변경없음

읍면	도로의 종 류	노 선 번 호	노선명	총연장 (Km)	도로구간		주요 경과지	(변경) 고시사유
					기 점	종 점		
유천	면도	102	고림선	1.3	고림리 산 50	고림리 5-2	고림리	연장조정 (감0.1)
유천	리도	201	중곡선	3.2	손기리 411-4	사곡리 99-1	손기리 사곡리	선형조정 종점변경 (감0.3)
유천	리도	202	송매선	3.3	가리 566-13	송지리 620-1	가리 송지리	변경없음
유천	리도	203	사마선	1.8	사곡리 99-1	송전리 437	사곡리 송전리	선형조정 기점변경 (감0.1)
유천	리도	204	연어선	1.7	연천리 61-4	용암리 179-2	연천리 용암리	변경없음
유천	리도	206	화고선	1.7	화지리 444-1	고산리 381	화지리 고산리	변경없음
유천	리도	207	화이선	1.5	화지리 418-57	가리 55-2	화지리 가리	변경없음
유천	리도	208	송마선	1.4	중평리 225	마천리 317-6	중평리 마천리	연장조정 (감0.1)
유천	농도	301	매광선	2.2	가리 891	광전리 36-1	가리 광전리	변경없음
유천	농도	302	광수선	0.5	수심리 630-7	수심리 76	수심리	선형조정 기종점변경 (감1.3)
유천	농도	303	송흑선	0.5	송지리 128-1	송지리 620-1	송지리	변경없음
유천	농도	304	화금선	0.6	화지리 432-3	화지리 산 48	화지리	연장조정 (증0.1)
용궁	면도	101	동금선	1.4	읍부리 501-1	금남리 613-1	읍부리 금남리	변경없음
용궁	면도	102	금향선	1.6	무이리 1143	금남리 54-10	무이리 금남리	변경없음
용궁	면도	103	대덕선	5.9	대은리 968	덕계리 781-4	대은리 덕계리	선형조정

읍면	도로의 종 류	노 선 번 호	노선명	총연장 (Km)	도로구간		주요 경과지	(변경) 고시사유
					기 점	종 점		
용궁	리도	203	월계선	2.3	송암리1-2	월오리1228-4	송암리 월오리	변경없음
용궁	리도	204	대지선	1.8	산택리 102-1	무지리 123-3	산택리 무지리	연장조정 (감0.1)
용궁	리도	205	향은선	2.0	무이리 10-4	대은리 970-3	무이리 대은리	변경없음
용궁	리도	206	무향선	1.2	무이리 1153	무이리 370-6	무이리	선형조정 기점변경 (감2.6)
용궁	리도	207	대의선	2.9	가곡리 727	대은리 493-9	가곡리 대은리	변경없음
용궁	농도	301	금월선	2.9	읍부리 507	읍부리 56-2	읍부리	연장조정 (증0.1)
용궁	농도	302	가월선	2.1	가야리 233-2	월오리 1105-2	가야리 월오리	변경없음
용궁	농도	303	용월선	2.8	송암리 477-6	월오리 365-7	송암리 월오리	선형조정 (감0.2)
용궁	농도	304	나달선	1.5	월오리 1233	월오리 87-16	월오리	연장조정 (감0.3)
용궁	농도	305	성저선	2.4	향석리 375-8	향석리 산66-2	향석리	선형조정 기종점변경 (증0.8)
용궁	농도	306	성포선	2.1	대은리 산 26-3	대은리 418-2	대은리	연장조정 (감0.1)
개포	면도	103	황신선	3.9	황산리 304-2	신음리 546	황산리 신음리	연장조정 (증0.1)
개포	리도	201	황산선	1.0	황산리 7-9	입암리 101-4	황산리 입암리	변경없음
개포	리도	202	가용선	1.0	가곡리 772-4	가곡리 2-1	가곡리	연장조정 (감0.1)
개포	리도	203	장황선	3.3	황산리 749	장송리 550	황산리 장송리	연장조정 (감0.1)

읍면	도로의 종 류	노 선 번 호	노선명	총연장 (Km)	도로구간		주요 경과지	(변경) 고시사유
					기 점	종 점		
개포	리도	204	가이선	3.8	우감리 884	금리 631-2	우감리 금리	연장조정 (감0.1)
개포	농도	301	이경선	2.8	경진리 657-1	우감리 864	경진리 우감리	연장조정 (감0.1)
개포	농도	302	금화선	2.7	금리33-1	금리 산 38-1	금리	변경없음
개포	농도	304	신경선	4.8	동송리 1-9	신음리 545-3	동송리 신음리	연장조정 (감0.1)
개포	농도	305	죽전선	2.5	신음리 545-3	신음리산 104-17	신음리	연장조정 (증0.2)
지보	면도	101	암천선	2.0	암천리 715	암천리산17-12	암천리	변경없음
지보	면도	102	소화선	1.4	소화리1488	소화리 168-3	소화리	연장조정 (감0.2)
지보	면도	103	소암선	7.6	소화리 1481	암천리 349	소화리 암천리	변경없음
지보	리도	201	매창선	6.7	마전리 1057-4	마산리 633	마전리	연장조정 (증0.3)
지보	리도	202	상수월	3.1	소화리 282-3	어신리 1210-5	소화리 어신리	선형조정 종점변경 (감5.1)
지보	리도	203	마산선	-	-	-	-	지정해지 (군도 26호선)
지보	리도	205	한골선	2.2	만화리 803	만화리 788-4	만화리	변경없음
지보	리도	206	신소선	1.2	신평리 1023-2	신평리 307	신평리	연장조정 (증0.1)
지보	리도	207	지경선	2.3	도장리 50-4	지보리 908-94	도장리 지보리	변경없음
지보	리도	208	갈동선	1.8	어신리 1210-5	어신리 269-16	어신리	선형조정 기점변경 (증0.1)

읍면	도로의 종 류	노 선 번 호	노선명	총연장 (Km)	도로구간		주요 경과지	(변경) 고시사유
					기 점	종 점		
지보	리도	209	마화선	4.6	마산리 956	만화리 838	마산리 만화리	연장조정 (감0.1)
지보	리도	211	대광선	0.3	대죽리 659-10	신평리 200	대죽리 신평리	변경없음
지보	리도	212	마매선	2.1	마전리 946-3	매창리 789	마전리 매창리	변경없음
지보	농도	301	소화선	2.6	마전리 1042	도화리 1014-2	마전리 도화리	변경없음
지보	농도	302	내골선	2.6	매창리 666-2	소화리 1078-2	매창리 소화리	연장조정 (감0.1)
지보	농도	303	상월선	2.1	상월리 620	수월리 883-1	상월리 수월리	선형조정 종점변경 (감2.1)
지보	농도	306	신평선	0.4	신평리 95-2	신평리 60-1	신평리	선형조정 종점변경 (감1.8)
지보	농도	307	큰골선	2.3	마산리 938-22	마산리 산 3	마산리	연장조정 (증0.3)
지보	농도	308	어갈선	3.2	어신리 879-5	암천리 726-2	어신리 암천리	변경없음
지보	농도	309	죽동선	2.3	도화리 313-2	도화리 산 24-1	도화리	연장조정 (증0.1)
지보	농도	310	-	0.8	수월리 868	수월리 855-1	수월리	신규지정
풍양	면도	101	낙흔선	10.0	효갈리 198-3	흔효리 539	효갈리 흔효리	선형조정 기점변경 (감2.0)
풍양	면도	102	낙우선	5.9	낙상리 700-14	우망리 996	낙상리 우망리	선형조정 기점변경 (증0.1)
풍양	면도	103	오청선	4.1	오지리 256	청곡리 1010-1	오지리 청곡리	변경없음
풍양	리도	203	수산선	5.3	낙상리 89-14	고산리 산71	낙상리 고산리	연장조정 (감0.3)

읍면	도로의 종 류	노 선 번 호	노선명	총연장 (Km)	도로구간		주요 경과지	(변경) 고시사유
					기 점	종 점		
풍양	리도	204	하망선	6.3	흔효리 116-2	하풍리 523-2	흔효리 하풍리	연장조정 (증0.1)
풍양	리도	205	서동선	-	-	-	-	지정해지 (면도 102호선)
풍양	리도	206	-	1.5	청운리 1071-27	청운리 1071	청운리	신규지정
풍양	농도	301	효당선	2.6	효갈리 524-9	괴당리 778	효갈리 괴당리	선형조정 종점변경 (감0.2)
풍양	농도	302	신흥선	2.0	오지리 138-1	흥천리 724	오지리흥 천리	선형조정 기점변경 (감0.5)
풍양	농도	303	낙하선	3.5	낙상리 1268-1	와룡리 산 60-3	낙상리 와룡리	변경없음
풍양	농도	304	청구선	1.2	청운리 1071-41	청운리 357	청운리	선형조정 종점변경 (감1.2)
풍양	농도	305	괴신선	1.6	괴당리 470-3	공덕리 200-2	괴당리 공덕리	변경없음
풍양	농도	307	전오선	1.5	낙상리 1313	오지리 239-2	낙상리 오지리	변경없음
풍양	농도	308	삼강선	2.5	삼강리 466-5	삼강리2	삼강리	변경없음
풍양	농도	309	고풍선	1.3	풍신리 842-1	풍신리 832-3	풍신리	선형조정 기종점변경 (감1.7)
풍양	농도	310	산성선	2.5	풍신리 849	풍신리 1080	풍신리	선형조정 기점변경 (감0.3)
풍양	농도	311	-	2.7	낙상리 1044-2	효갈리 465-3	낙상리 효갈리	신규지정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법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예 천 군 수 (인)



구 분	하천점용허가
하 천 명	한천(지방하천)
점 용 자	예천군수(농정과장)
주 소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위 치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248,310-1번지
점용면적	26,222㎡
점용목적	토지의 점용(예천농산물축제장)
사업개요	축제장 운영에 따른 임시시설물 설치
점용기간	2025년 10월 23일 ~ 2025년 11월 03일

예천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 공고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예천 군계획시설(도로:소로3-44호)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3일

예 천 군 수

1. 군계획시설(도로)사업 현황

○사업의 위치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180-3번지 일원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의 명칭 : 남본 개심사지 옆 도시계획도로(소로3-44호) 덧씌우기
공사

○사업의 규모 : 도로 덧씌우기 $A=172.0m^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예천군수

- 주 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사업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 2025. 12. 3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조서와 같음

2.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25. 10. 23. ~ 2025. 11. 6. (공고일로부터 15일간)
-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예천군청 도시과 도시개발팀(☎054-650-6233)
- 관계도면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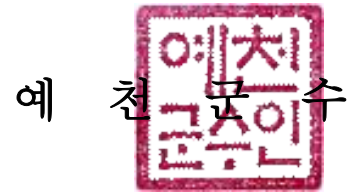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읍·면	리	지번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종류	성명	
1	예천	남본	180-3	도	2630	172		예천군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군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중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확대(안 제14조의2)

- 국가 또는 지자체의 공익 목적 가설건축물, 전본주택이나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 3년의 범위에서 5회 연장가능 ⇨ 무제한

나.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일부 삭제(안 제24조의2)

- 준공 후 재설치 기준 삭제(개정된 시행령에 따름)

다.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단서조항 삭제(안 제53조, 안 제61조)

- 계획관리지역 중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의 완화규정 삭제(조례 제65조의2에서 별도 규정)

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 지정(안 제65조의2)

- 구역 지정 범위 :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해 수립권자가 인정하는 지역
- 구역 변경 시 법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 외의 경우 재공람 절차 진행
- 수립 내용 : 교통처리계획, 방재계획, 주민편의시설계획 포함 가능
- 경미한 변경 :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준용

※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도로모퉁이변 조정, 면적산정 착오 정정, 허용 오차 반영, 변속차로·차량출입구 또는 보행자출입구 설치, 명칭 변경에 따른 변경

마.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 입지 제한 삭제(안 별표 24)

- 주택에서 50m 이내 입지 불가 기준 삭제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2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 전화 : 054-650-6346, 팩스 : 054-650-6349
- 전자우편 : ugongisan@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견	비고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중 “횃수별 3년의 범위에서 5회까지”를 “횃수와 상관없이”로 한다.

제24조의2제4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53조제19호 중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제61조제1항제19호 중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제65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업지역·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④ 영 제70조의13제5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 외의 경우를 말한다.

⑤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교통처리계획
2. 방재계획

3. 주민편의시설계획

- ⑥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별표 16, 별표 19, 별표 22, 및 별표 2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은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만 해당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업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

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
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
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2호 아목 (1)부터 (5)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
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동일한 특별시·광
역시·시 및 군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공장(「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으로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 (1) 별표 18 제2호 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출판 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 (나) 「화장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 (다) 「농약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 (마) 동·식물 등 생물을 기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다음의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 1)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 2)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 있는 제조시설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염색시설은 제외한다.
 - (가)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할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표백시설, 정련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금속성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 (라)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할 것
-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한 층수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별표 24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
는 것과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별표 24의 규정에 해
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아목·자목·너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

관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관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8 제2호 자목(1)부터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4】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 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내성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삭제

주

-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 2)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 4)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라 함은 행위허가 신청 당시 이미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주거용 부분에 한정하며 부속건축물은 제외함)의 총 호수 10호 이상인 지역으로서 행위허가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하는 것으로 산정하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세대수와 상관없이 1호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u>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5회까지</u>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 ----- ----- ----- ----- ----- ----- <u>횟수와 상관없이</u> -----.
제24조의2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① ~ ③ (생략)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 인접토지 재해 예방 등을 고려하여 발전시설 설치를 허가 할 수 있다. 1. ~ 5. (생략) 6. <u>개발행위준공 이후 재설치 하는 경우. 다만, 당초 개발행위허가 면적 이하이고, 바닥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3미터 이하인 동시에 토지형질변경(절토·성토</u>	제24조의2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1. ~ 5.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정지·포장)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며, 인근 주택 등을 고려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 ⑧ (생략)

제5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1. ~ 18. (생략)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에 125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한다.

20. · 21. (생략)

제6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1. ~ 18. (생략)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에 125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한다.

20. · 21. (생략)

② ~ ⑤ (생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5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1. ~ 18. (현행과 같음)

19. -----.
<단서 삭제>

20. · 21. (현행과 같음)

제6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

1. ~ 18. (현행과 같음)

19. -----.
<단서 삭제>

20. · 21.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5조의2(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 ② (생략)

<신설>

제65조의2(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업지역·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④ 영 제70조의13제5항에서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 외의 경우를 말한다.

⑤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교통처리계획

2. 방재계획

3. 주민편의시설계획

⑥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법 제54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횡수별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횡수만큼

나.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2. 재해복구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3.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보수를 포함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것

2)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을 것

3. ~ 6. 생략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0조의1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법 제7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인구 감소 또는 경제성장 정체 등으로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성장관리
가 필요한 지역
2. 공장 등과 입지 분리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제70조의13(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성장관리계획구역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성장관리계획구역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및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이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 ⑦ 법 제75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성장관리계획구역을 변경하는 부분에 둘 이상의 읍·면 또는 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읍·면 또는 동 단위로 구분된 지역의 면적을 각각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성장관리계획구역 면적의 일부를 변경(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함께 결정하는 경우. 다만,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

⑧ 법 제75조의2제5항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고시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목적
2.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위치 및 경계
3.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 및 규모

제70조의14(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75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토지개발·이용, 기반시설, 생활환경 등의 현황 및 문제점
2.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75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을 말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75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제70조의13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변경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의2.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하는 동시에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에 부합하도록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성장관리계획의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로의 경우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로서 중심선이 종전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지형사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3.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높이의 변경인 경우

4.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

④ 법 제75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5조의2제5항에 따른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고시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목적

2. 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내용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75조의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성장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해야 한다.

1. 개발수요의 주변지역으로의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 또는 경계의 적정성

2. 성장관리계획이 난개발의 방지 및 체계적인 관리 등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

3.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는 수준을 초과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는 등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4. 향후 예상되는 여건변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1. 생략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u>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나. ~ 마. 생략

3.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

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업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골재선별·파쇄 업종의 공장,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제1항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자목·너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어업인

(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업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경미한 도시·군관리계획변경사항) ① 영 제25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도로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
2.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내용 중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따른 변속차로, 차량출입구 또는 보행자출입구의 설치를 위한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
5. 도시·군계획시설의 명칭의 변경

② ~ ④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12조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 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양쪽 기슭)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삭제 <2024. 5. 29.>

주

-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 2)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예천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공람공고

예천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7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3, 제70조의14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3일

예 천 군 수

1. 주요 내용

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구 분	계획관리 지역	계		일반형			유도형(주거형)		
		개소	면적	개소	면적	비율	개소	면적	비율
예천군	135.05	660	108.66	650	107.94	99.3	10	0.72	0.7

나.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 기반시설의 계획에 관한 사항
- 건축물 용도계획, 건폐율 및 용적률 계획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주차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
-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다. 관계도서 및 상세내용 : 게재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2. 공람기간 : 2025. 10. 23. ~ 2025. 11. 6.(14일간)

3.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예천군청 도시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도시과(☎054-650-63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공람내용은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서

사업명	예천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제출자	성명		연락처	
	주소			
제 출 의 견				
예천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공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예 천 수


1. 조례명 : 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일·가정 양립을 중시하는 정부 기조에 부응하여, 본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당직근무 체계를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직원들의 휴식권과 가족 돌봄 여건을 보장하고, 관련 규칙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화(안 제3조, 제14조, 제31조, 별지 제10호서식)

나. 당직근무자 편성기준 변경(안 별표 1)

○ 본청 : 일직 4명 → 3명, 숙직 3명 → 2명 변경

○ 읍면 : 일직 → 재택 변경

4. 개정규칙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2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고 : 총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총무과

- 전화 : 054-650-6832

- 팩스 : 054-650-6309

- 전자우편 : thsqhfo@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총무과(전화: 054-650-6832)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건 서

☐ 자치법규명: 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규칙 제 호

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의 “부군수”를 “총무과장”으로 하고, 제14조제1항제1호의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재난과장”으로 하며, 제31조제3항제3호의 “총무과”를 삭제한다.

별표 1,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당직근무자 편성기준(제6조 제2항 관련)

구 분		본 청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
		당직 사령	당직 반장.반원	운전원	당직반원
평일	숙직	1명 (6급)	1명	1명 (재택)	1명 (재택)
토요일 또는 공휴일	일직	1명 (5급)	반장 1명(6급) 반원 1명		1명 (재택)
	숙직	1명 (6급)	1명	1명 (재택)	1명 (재택)

당직근무 면제 신청서 (제6조의2 관련)

소속	
직위(급)	
성명	
당직근무 면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당직근무 면제사유	
기타	

위의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의 당직근무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총무과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직명령자”란 본청은 <u>부군수</u> , 소속기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정의) ----- -----. 1. ----- <u>총무과장</u> , ----- -----.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곧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경비용역업체, 관할 소방서와 군수, 부군수, <u>재난관리과장</u> 에게 급보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 ----- ----- --. 1. ----- -----, <u>안전재난과장</u> ----- -
제31조(상황실 설치운영)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략) 3. 연락반 : <u>총무과</u> 문서 및 통신 업무 담당직원	제31조(상황실 설치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2. (현행과 같음) 3. 연락반 : 문서 및 통신업무 담당 직원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를 일부개정조례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예 천  수

1. 조례명 :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 생활 속 고충 제도개선 권고 사항인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공공체육시설의 환불 기준 및 면책 사항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 수단 확대(안 제3조)

○ 신청 수단 : (당초) 군수의 허가 → (변경) 군수 또는 통합예약시스템

나. 사용료 환불 처리 기한 신설(안 제8조)

○ 처리 기한 : 사유 발생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 반환

다. 사용료 반환에 관한 면책 기준 확대 및 구체화(안 제8조)

○ 면책 기준 : (당초) 천재지변 및 우천 → (변경)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고가 발생 혹은 발생 예고된 경우

4.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체육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sorama83@korea.kr

2) 주소 : 우)36819 경북 예천군 예천읍 양궁장길 38, 체육사업소 시설관리팀

3) 팩스 : 054-650-642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체육사업소(전화: 054-650-64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위한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를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예천군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거나 예천군에서 관리하는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사유발생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및 환급부서의 여건에 따라 반환기일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3호 중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반환”을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 혹은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체육시설의 사용)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u>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한다.</u>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제3조(체육시설의 사용) ①----- ----- <u>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예천군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거나 예천군에서 관리하는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u> ----- -----.
제8조(사용료의 반환)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u>	제8조(사용료의 반환) <u>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사유발생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및 환급 부서의 여건에 따라 반환 기일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u>
제8조(사용료의 반환) 1·2 (생략) 3. <u>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반환</u>	제8조(사용료의 반환) 1·2 (현행과 같음) 3. <u>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사유가 발생 혹은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u>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